

의안번호	2203133
의 퇴 인	백종헌의원
회 답 일	2024.9.24.
추 계 번호	24C3028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‘의료기기의 날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2025년에 7,400만원, 2029년에 8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억 8,700만원(연평균 7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의료기기의 날 지정 (안 제2조의2)	74	76	77	79	81	387	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의2 (의료기기의 날 지정)	○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함(제1항) ○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홍보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지출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
1	안 제2조의2 (의료기기의 날 지정)	○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‘의료기기의 날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교육·홍보 등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념일 행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「의료기기법」 제정일인 5월 29일을 ‘의료기기의 날’로 자체 선포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
 - 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현행 ‘의료기기의 날’ 행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상식,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등에만 4,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체 실시하고 나머지 행사 비용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부담함
 - 개정안에 따라 ‘의료기기의 날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경우, 현행 기념품 제작 및 배부에 한정된 지원 외에 기념식 진행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유사사례로서 보건복지부는 국가기념일인 ‘장애인의 날’과 ‘사회복지의 날’ 기념행사 주최 시 훈·포장 시상 등에 한해 자체예산으로 실시하고 있고, 전체적인 기념식 진행 등은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

[표 2] 의료기기의 날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기념일 주요행사 소요비용 현황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	의료기기의 날	장애인의 날	사회복지의 날
법적 근거			안 제2조의2 (현행 민간 단체와 행사 공동 실시)	「장애인복지법」 제14조 (장애인의 날)	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5조의2 (사회복지의 날)
기념행사	소관부처 실시		시상식 등 행사 운영, 기념품 배부 등	홍보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	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시상, 행사 및 홍보
	위탁 기관 실시	기관명	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	한국장애인개발원 (산하 공공기관)	사회복지협의회 (민간 위탁)
		실시 항목	행사장 운영 (행사장 임차, 홍보관 운영 등) 및 소통화합을 위한 부대행사 운영 (강연, 축하 공연 등)	기념식 진행, 훈·포장 시상	기념식 진행
소관부처 소요 예산 (2024년 기준)	소관부처 자체 예산		40	52	29
	위탁기관 지원		—	120	24
	소요 예산 합계		40	172	53

자료: 식품의약품안전처, 보건복지부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, 2024년 기념 행사를 이미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‘의료기기의 날’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·홍보 등 관련사업 실시에 따른 비용임
- 추가재정소요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‘의료기기의 날’ 기념식 진행, 홍보·교육을 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데에 따른 비용임
 - － 행사운영비용과 표창·기념품 제작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미 지원 중인 항목이므로 본 추계에서 제외

- 개정안의 ‘의료기기의 날’ 관련 행사 등의 내용은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
 - 유사사례는 ‘장애인의 날’과 ‘사회복지의 날’이 있으며, 2024년 예산은 각각 1억 7,200만원과 5,300만원임
 -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표창·기념품 제작 등에 4,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으므로, 유사사례 평균 예산에서 기 소요금액 4,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재정소요로 가정
 - 추계기간 중 추가재정소요액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‘의료기기의 날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2025년에 7,400만원, 2029년에 8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억 8,700만원(연평균 7,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의료기기의 날 지정 (안 제2조의2)	74	76	77	79	81	387	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